

부천시 파워스(POWERS) 테니스 클럽 회칙

제정 : 2003.12.13
개정 : 2004.12.31
개정 : 2005.01.15
개정 : 2005.11.19
개정 : 2006.11.18
개정 : 2007.11.17
개정 : 2008.11.15
개정 : 2011.11.19
개정 : 2012.04.21
개정 : 2016.12.17
개정 : 2017.11.1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파워스 테니스 클럽"이라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테니스를 통한 회원의 체력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와 인화를 굳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사업) 본 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매월 월례대회를 개최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별표1의 클럽 월례대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2. 매주 주례경기를 갖으며 그 시기와 방법은 별표2의 클럽 주례경기 운영규칙에 따른다.
3.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자율 경기를 갖는다.
4. 회원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각종 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이하 회원으로 칭한다)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자격)

1. 정회원 : 본 클럽의 목적에 찬성하고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테니스인으로 하며, 여성의 가

입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선수출신은 예외)

2. 준회원 :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으로 본 클럽 활동 중 타지로 진출한 회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일정기간 클럽활동을 할 수 없는 회원으로서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자, 클럽 가입신청이 대기 중인 자로 한다.
3. 기타 : 기타 회원 자격 문제는 총회 의결을 따른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본 클럽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2. 본 클럽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3. 본 클럽의 운영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할 수 있다.
4. 기타 회칙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클럽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본 클럽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월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제8조 (가입, 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추천 및 본인 스스로 가입을 희망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임원간의 합의로 가입이 결정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입은 유보된다. 임원회의에서 가입이 결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전 회원에 알려야 하며, 회원 중 단 1명이라도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은 유보한다.
2. 탈퇴는 회원의 탈퇴의사를 임원단에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회칙에서 정한 월 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한 회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회원 간의 폭언, 폭행 등을 행사하여 회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자는 임원회의에서 경고 조치하며, 2회 경고 후 3회 시 임원회의에서 제명 처리한다.

제4장 임원 및 감사의 구성과 의무

제9조 (임원 및 감사) 본 클럽의 임원 및 감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 문 : 1 명
2. 회 장 : 1 명
3. 부 회 장 : 1 명
4. 수석총무 : 1 명
5. 재무총무 : 1 명
6. 경기이사 : 1 명
7. 감 사 : 1 명 (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1. 고문은 직전 회장을 역임 한 회원으로 한다.
2. 회장 후보자와 회장 후보자가 추천한 임원진(부회장, 경기이사, 수석총무, 재무총무)은 정기총회 전 회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며, 정기총회 시 인준하는 것으로 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 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인준하는 것으로 한다.
3. 총회에서 임원진에 대한 인준 부결 시 차기 월례대회 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 인준을 실시한다.

제11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및 감사의 결원)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제10조에 의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회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3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1. 고문은 본 클럽을 대표한 경력을 활용하여 현 임원진에 클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한다.
2.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여 회무와 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권리와 의무를 갖으며, 매월 및 연차 감사보고서를 작성,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매월 감사보고는 월례대회 시, 연차 감사보고는 정기총회 시 하여야 한다.
4.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신하여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수석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회원관리
 - 나. 주례 및 월례대회 주관
 - 다. 각종 대외경기 참가 시 출전 회원 지원
 - 라. 총회 준비
 - 마. 총회 및 임원회의 안건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및 조율, 결정사항에 대한 공지
 - 바. 기타 회장 및 부회장 유고 시 회장 대행
6. 재무총무는 회장 및 수석총무를 보좌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회계관리
 - 나. 기타 수석총무 유고 시 수석총무 대행
7. 경기이사는 각종 경기의 계획 및 진행을 주관함에 있어 회원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월례대회 파트너 선정 및 진행
 - 나. 대외 경기 출전 시 파트너 선정
 - 다. 클럽 주최대회의 대회 운영

제5장 총회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1년 1회(11월), 임시총회는 임원 회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 총회는 회원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6조 (총회의 임무) 총회의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회계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제17조 (총회 의결)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임원회의)

1. 소집 : 회장이 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건은 다음과 같고, 총무는 결정된 사안을 회원 모두에게 공지,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심의안건 :
 - 가. 신입회원 심의
 - 나. 월례대회 및 주례경기 운영
 - 다. 대외 경기 참가
 - 라. 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클럽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의결 : 임원회의 의결은 반드시 임원간의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재정)

1. 수입 : 본 클럽의 수입은 회원의 월회비 및 입회비(단 준회원 및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 가. 월회비 : 5만원
 - 나. 입회비 : 20만원
 - 다. 특별회비 : 회계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의 동의를 거쳐 각출 할 수 있다.

라. 찬조금 : 강제 규정은 없으며, 회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2. 지출 :

가. 코트사용료 : 주2회(화,목) 라이트 사용, 토, 일 주간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은 매 월 월단위로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례대회 경비

다. 주례경기 운영비(불, 음료 등)

라. 경조사비 : 200,000원(회원 및 회원 직계자녀의 결혼, 부모, 장인, 장모, 본인 사망 시에 한하여 집행한다. 단, 준회원은 예외로 한다.)

마. 연합회 연회비

바. 각종 대회 찬조

사. 대회 참가 경비 : 클럽 단체전의 경우 회비에서 참가비를 지원한다.

아. 총무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재무관리 지출내역에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기타 클럽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친 비용. 단, 긴급히 사용해야 할 경우는 사후 인준을 거칠 수 있다.

부 칙 (2003.12.13)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회비 유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회하는 신입회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회비를 적용한다.

부 칙 (2005.01.1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1.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일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5)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1.19)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4.21)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2년 0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17)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8)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례대회 운영규칙

제1조 (일시) 클럽 월례대회는 매월 (3째 주 토요일 오후)에 개최한다.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원단에서 결정하며, 총무는 다음 1항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최소한 1주일 전에 회원 모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우천 시
2. 공식대회 개최 등으로 코트 사용 불가 시
3. 명절시
4.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제2조 (참석대상)클럽 월례대회는 모든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제3조 (파트너선정) 파트너선정은 회원의 능력 및 의사를 고려하여 경기이사가 선정하여 경기한다. 경기이사 부재 시 총무가 대행한다.

제4조 (재정) 월례대회 운영비용은 클럽의 재정형편에 맞춰 임원진에서 집행한다.

제5조 (시상) 월례대회 상품은 반드시 순위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경기운영) 경기는 회원의 참석상황에 따라 부를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주례경기 운영규칙

제1조 (일시) 클럽 주례경기는 매주 화, 목 야간과 토, 일 주간에 하며, 코트 운영은 다음과 같고, 클럽재정, 코트사정 등 불가피할 경우 일시와 이용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화, 목 : 야간
2. 토, 일 : 주간

제2조 (참가대상) 주례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클럽 회원
2. 타 클럽 회원
3. 본 클럽 가입 추천을 받은 자


제3조 (재정) 주례경기 운영비용 중 제1조에 명시한 일시에 대한 코트사용료는 클럽재정에서 지출되며, 기타 사항은 참가 회원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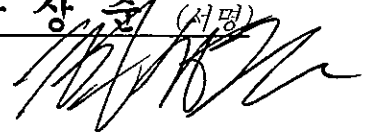
위와 같이 부천시 파워스 테니스클럽 회칙을 인계·인수 합니다.

2017년 12월 16일

인계자

인수자

2017년도 회장 홍 순 찬 

2018년도 회장 한 상 준 (서명) 

입회인

감사 김 기 수 (서명) 